

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기준(제41조제2호 관련)

1. 번호등의 설치기준

가. 설치위치

번호등은 번호판을 잘 비추는 위치에 설치할 것

나. 작동조건

후미등·차폭등·옆면표시등·끝단표시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

다. 표시장치

번호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표시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폭등과 후미등 표시장치로 대체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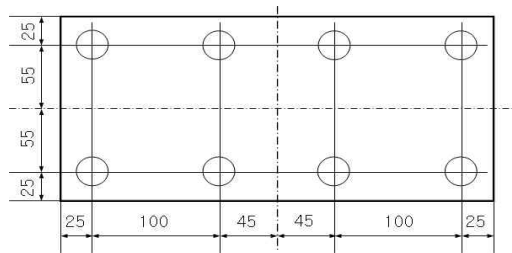
라. 그 밖의 기준

번호등이 후미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, 제동등 또는 뒷면안개등 내에 상호 결합된 경우 번호등의 광학적 특성은 제동등 또는 뒷면안개등이 점등되는 동안 변경 가능한 구조도 가능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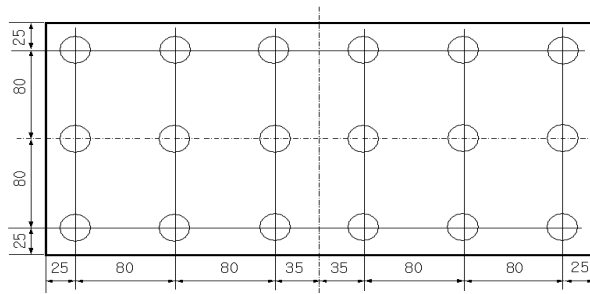
2. 번호등의 휘도기준

가. 등록번호판 시험판의 규격 및 휘도 측정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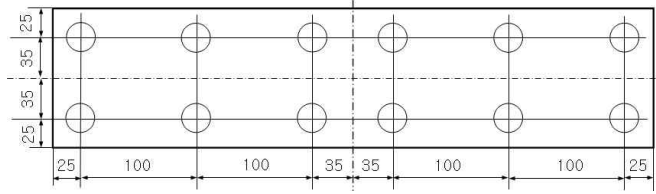
1)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335×155mm 또는 335×170mm인 경우



2)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440×200mm 또는 440×220mm인 경우



3)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520mm×110mm인 경우



주)

1. 단위: 밀리미터
2. ○: 휘도 측정점(지름 25밀리미터)

나. 휘도 기준

- 1) 측정점별 최소 휘도는 2.5cd/m^2 이상일 것. 다만,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± 20 퍼센트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.
- 2) 임의의 두 측정점의 휘도차이를 두 측정점의 거리(cm)로 나눈 값은 측정된 최소휘도값의 2배 이하일 것. 다만,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2.5배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.

$$\frac{B_2 - B_1}{(1, 2 \text{ 측정점 사이의 거리})} \leq 2 \times B_0$$

B_0 = 측정된 최소휘도값

B_1, B_2 = 임의의 두 측정점의 휘도값

- 3) 삭제 <2026. 6. 5.>